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법무 02124-	(전화번호 6556)	전결구분	조항 전경사항
처리기간	시 장			
시행일자	1987. 12. 30	1987. 12. 31		
보존년한	준 영 구			
보 조 기 관	부 시 장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	법 조		
시안제일자	이재효	1987. 12. 30		
경 수 신 관 도	각 안 참 조	발 신	발신 1987. 12. 31 서울특별시 법무부	통 제 관
제 목	서울특별시신설구업무처리에관한점정규정제정 발령			
(제 1 안) 내부결재				
1. 인사 02124-431(87.12.30)호와 관련입니다.				
2. 서울특별시신설구업무처리에관한점정규정을 별첨(안)과 같이 제정 하고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인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.				
첨부	발령안 1부.	87. 12. 31 650		정서
				관인
				발송
(제 2 안)				
수 신 : 공보관				
제 목 : 시보 게재				

정직 26일 창조

별첨	서울특별시신설공업무처리에관한점정규정제정	규정윤
시보에	게재	발령할것.
첨 부:	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	끝.
(제 3 안)		
수 신:	인사과장	
제 목:	훈령 발령	
	서울특별시 신설공업무처리에관한점정규정제정	규정윤
별첨과	같이	시보에
	게재	발령하였으니
	시행에	착오
	없도록	할것.
첨 부:	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	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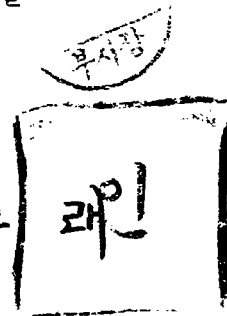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신설구업무처리에관한잠정규정제정 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

19 87년 12 월 31 일

서울특별시장

김 용



서울特別市 訓令 第256호

서울특별시 新設區 業務處理에 관한 暫定規程

新設區 業務處理에 관한 暫定規程을 다음과 같이 制定한다.

第1條 (目的) 이 規程은 大統領令 第12779호에 의하여 1988年 1月1일부터 開設되는 新設區 業務處理의 원활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 (業務處理) ① 新設區 (新設 保健所를 包含한다. 이하 같다)의 業務處理는 新設區 機構의 해당 職位에 대한 새로운 補職空位가 있을 때까지 新設區 管轄區域이 속하였던 從前區 (以下 從前區라 한다) 機構의 같은 職位 補職公務員이 各各 兼任하여 處理한다.

② 新設區의 行政事務中에 從前區에 없던 事務의 處理基準은 따로 정한다.

附 則

이 規程은 198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.